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080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
TEL 02-2620-4960 FAX 02-2652-7223 http://ycc.go.kr



알기 쉬운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 천 구 의 회
YANGCHEON COUNCIL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방의회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지방의회의 지위

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과 이와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천구의회 연혁

초대 의회 1991.4.15-1995.6.30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여 20개 선거구에서 39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1년 4월 15일 초대 양천구의회가 구성

2대 의회 1995.7.1-1998.6.30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20개 선거구에서 34명의 의원이 선출

3대 의회 1998.7.1-2002.6.30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20개 선거구에서 20명의 의원이 선출

4대 의회 2002.7.1~2006.6.30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거 20개 선거구에서 20명의 의원 선출

5대 의회 2006.7.1~2010.6.30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8개 선거구에서 2명씩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의원이 선출

6대 의회 2010.7.1~2014.6.30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8개 선거구에서 2명씩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의원이 선출

7대 의회 2014.7.1~현재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8개 선거구에서 2명씩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의원이 선출

의결기관으로서 하는 일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의결권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과 결산을 심의 · 확정 · 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 · 의결합니다.

궁금합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양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절차 ▶▶▶▶▶

발 의	구청장 제출 / 제적의원 1/50이상 연서 발의
↓	
의 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 송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 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양천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예산과 결산이란?

양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 확정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 (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양천구의회에서 하는 일 Ⅱ

감사 · 견제기관으로서 하는 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 실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구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란?

집행기관의 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회에서 하는 일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 수리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건의하는 역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란?

구민이 집행기관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구의회의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 ·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진정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적 기관에 대하여 주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행위로 진정서 제출시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서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도 건의서, 탄원서, 결의서 등으로 다양하고, 제출방법도 우편, 인터넷, 팩스, 방문 등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회 방청 및 참관 안내

방청신청 › 신분증 및 인원 확인 › 방청권 교부 › 방청

방청 및 참관 신청은 의사팀(☎02-2620-4968~74)으로 신청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양천구의회 구성 및 운영

양천구의회 구성

양천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들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3개의 상임위원회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말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소관부서와 관련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 · 처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행정재경위원회 ▸▸▸

행정감사, 인력배치, 사업계획, 예산회계, 안전, 세무, 지역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 처리합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

복지건설위원회 ▸▸▸

주민복지, 교육, 주택, 토목, 교통, 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 처리합니다.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양천구의회 운영

양천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 일수는 1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정례회는 연 2회, 매년 7월 5일과 11월 25일에 개최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됩니다.
이러한 정례회와 임시회 기간 동안에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본회의란?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원 합의체이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란? ▸▸▸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 심의 전에 먼저 심사함으로써 의안 처리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 운영되는 회의체입니다.

특별위원회란? ▸▸▸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특별위원회

양천구 명소


수명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경인고속국도
신정역
(은행정역)
신정네거리역
남부순환도로
야호
지양산
신월문화체육센터
신정산
서부화물터미널
금옥여고
양천문화회관
양천구의회
양천구청
양천해누리타운
양천구청역
목동역
119
등촌역
염창역
신목동역
목동문화
체육센터
용왕산
오목교역
안양천
갈산